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1995년 5월 23일

- 회부일자 : 1995년 5월 23일

3. 개정이유

하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기본이 되는 국유재산법상 기준에 적합하도록 점용료 부과액의 형평성과 적정성을 유지코자 함.

4. 주요골자

○ 하천 점용료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방법의 개선

- 과세시가표준액 기준 → 공시지가로 기준

- 적용요율을 현행의 1/2로 낮추어 조정

○ 공업용수 인수에 따른 부과기준 개선

- 관경에 따라 월정액 → 사용량(허가량) 기준

- 하천수 사용료를 한국수자원공사의 댐원수대를 적용

( $\phi 25\text{m}/\text{m}$  월 5,000원 →  $\text{m}^3/\text{sec}$ 당 7.13원)

○ 일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를 물가상승에 따라 인상

- 전기사업 용수 ( $\text{m}^3/\text{sec}$ 당 연액 100,000원 → 200,000원)

-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료 → 현행의 2배로 조정

- 점용료 과다증가에 따른 조정근거 마련
  - 점용료가 과년도보다 10%이상 증가한 경우 조정산식에 의하여 조정  
(30% 증가시 → 14%조정, 100%증가시 →19%조정)
- 면적 및 기간 산정방법 개선
  - 1.0㎡미만은 반올림 → 계산하지 않음
  - 15일 이하는 1/2월, 15일 이상은 1월 → 매1일을 1/365일로

## 5. 검토의견

하천법 제33조(점용료등의 징수) 및 제34조(점용료등의 감면)과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(조례제정의 기준)에 의거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준칙(건설부 훈령 제42호) 발령에 따른 관련조례의 개정인바,

- ① 하천부지 점용료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가격 산정방법을 현행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던것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적용요율을 현행의 1/2로 조정하였으며,
- ② 공업용수 인수에 따른 점용료 부과기준을 현행 관경에 따라 월정액으로 부과하던 것을 사용량 기준으로 부과하고,  
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업용수를 댐원수대를 적용하여 형평성을 유지하였으며,
- ③ 전기사업용수 인수와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료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2배로 인상하였으며,
- ④ 점용료 과다증가에 대한 조정근거를 마련하고 면적 및 기간에 대한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